

◆ 政府施策 ◆

국산기계구입 外貨대출 시행

— 外貨出限度 25억弗…업체당 1500만弗이내 —

오는 7월 1일부터 국산기계구입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고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산기계구입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용자 대상자 선정 요령을 확정·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國產機械구입자금에 대한 外貨貸出 施行

1. 貸出限度

— 國產機械購入用 外貨貸出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年間限度를 설정하여 운용

- '96년중 貸出限度는 25억달러로 설정
- 承認額 基準으로 3/4분기중 50%, 4/4분기중 50%를 취급토록 함

2. 融資取扱 金融機關

— 현재 외화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外國換銀行*에 대하여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취급을 허용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개발기관, 외은지점, 증권사

3. 融資對象

가. 對象業體

- 中小企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生産者 또는 購買者中 적어도 하나가 中小企業인 경우로 한정
 - 中小企業은 對外信認度가 낮아 자기신용에 의한 해외자금이용이 어려운 반면 大企業은 海外外貨證券發行 등 외화자금 이용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大企業間 機械類 購入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나. 對象品目

- 한정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融資對象品目은 자금지원에 따른 波及效果가 큰 品目으로 한정
 -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尖端技術 및 製品의 範圍』*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상의 『資本財產業』**에 속한 기계설비류로서 國產化比率이 50%이상인 품목(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

4. 融資比率

-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所要資金 전액을 용자토록 하고 大企業이 購買하는 경우에는 所要資金의 70%이내로 용자비율을 차등 설정
- 同一人 貸出限度
 - 한정된 자금이 특정업체에 偏重貸出되지 않도록 1個業體當 貸出限度를 15백만달러로 한정

5. 融資期間 및 金利

- 현행 外貨貸出과 同一하게 운용
 - 融資期間 : 10년이내

- 融資金利 : 외국환은행이 주요 국제금융시장 금리 및 외화여수산업부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을
(대체로 Libor +1.0~1.5% 수준)

6. 融資節次 및 時期

- 외국환은행은 융자신청기업으로부터 다음의 확인기관이 발급한 “確認書”를 제출받아 융자대상품목 여부를 확인

〈확인기관별 확인대상품목〉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전 품목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통신기기류, 계측기기류, 정보처리시스템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전기기계류

- 用途外流用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機械設置가 완료된 후에 대출을 취급하고 차입자가 아닌 機械製作業者에게 직접 지급

- 다만 소요자금의 10%이내의 契約金, 50%이내의 中途金 지급은 가능토록 함

수도권 大企業공장 尖端단 허용 - 민간의 工團개발때도 부담금 50% 감면 -

그동안 전면 금지되었던 대기업의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내 공장신설이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을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국가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안산, 평택, 김포, 포천등 5개시, 12개군)내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종등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이전 규제도 완화, 도로건설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공장을 철거해야 할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수도권공장 건축면적 총량 규제도 완화, 총량규제 대상 공장건축면적에서 식당, 기숙사등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공단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제도와 관련해 행쇄위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 △민간기업이 공단을 조성할 때도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수준인 50%를 감면하고 △납부시기도 현행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서 3년간 분납으로 조정, 입주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도 조정, 부과대상 기준면적(도시계획구역내 300평, 구역외 500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업체 평균면적이 대상면적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내년 産業技術기반조성 1430억투입 - 通産部, 기술혁신 통한 競爭力배양 -

통산산업부는 내년에 총 1430억원을 투입해 기술인력, 기술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기술지원등 기술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내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예산 1430억원은 올해예산 298억5천만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기술대학 설립, 기계류부품 설계인력 양성사업 등 17개 기술인력양성 사업에 올해 보다 236억5천만원 늘어난 383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지역정보화사업, 업종별 정보화사업 등 6개 기술정보 확산 사업에 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기술혁신센터 설치, 대학중심형 테크노파크 조성 등 29개 공동연구기반 확충사업에 올해보다 무려 16배 가까이 늘어난 691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공학·기술인의 국제인력교류사업, IMS국제협력 등 7개 국제기술협력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담보 및 보험사업, 신기술보육사업 등 6개 산업기술지원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하고 정밀측정기술 표준화, 자본재산업 표준화 등 5개 표준화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割當關稅대상 19품목 追加

— 정부, 하반기 割當·調整關稅운용안 확정 —

수출업계가 관세부담의경감을 위해 관세율을 대폭 낮춰 주도록 요구해 왔던 기초원자재중 천연 고무·유연탄·철광석·비합금선철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무세화되는 등 오는 하반기중에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에 19개가 새로 추가됐다. 반면 상반기중에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기존의 스테인리스반제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폐지돼 오는 7월1일부터 기본관세가 적용된다. 하반기중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기존의 전기저항기가 제외되고 H-형강 등 4개가 추가됐다.

제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하반기 탄력관세(할당·조정관세) 운용안'을 심의,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운용안에 의하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품목은 △아세트아세트유도체 4%(8%) 등 5개 품목이며 물자수급의 안정을 위한 신규 적용품목은 △냉간단조용선재 4%(8%) 등 3개 품목이다.

수출업계 관세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 적용품목은 △니켈괴 3%(5%) 등 7개 품목이며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신규적용품목은 △광학유리 5%(8%) 등 3개 품목이다.

정부는 상반기중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47개 중 4개를 제외한 43개에다 새로 19개를 더해 총 62개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하반기중에 관련업계에 대해 1533억원에 달하는 관세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 조정관세가 새로 적용되는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보면 △냉동풍차 30%(기본관세율 10%), △조미오징어 30%(20%), △H-형강 15%(8%), △1회용라이터 15%(8%)이다.

■ '96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전기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 목	세 율(%)				
		기본(잠정)	현행	개정	증감(±)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규 소 전 기 장)	8	4	4	-	수입전량

輸出産業 저변확대 본격 推進

- 정부, 새有望商品 선정 예정 -

정부는 수출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에 다소 소홀히 해 왔던 경공업제품이나 기타 중화학공업제품을 새로운 주력 수출상품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을 본격 마련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제품이 세계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철강·유화제품 등에 지나치게 편중돼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전체 수출둔화가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울들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의 수출구조가 대기업이 생산하는 일부 특정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타개키 위한 대책으로 울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타 중화학공업제품 및 경공업제품 등의 수출확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같은 방침하에 통상부 주관으로 새로운 수출유망제품을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 이달중 관계부처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품목들의 수출애로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비롯한 마케팅 분야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선정할 품목들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 앞으로 정부가 수출산업저변확대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중시 방침'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달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무역수지 방어를 위한 수출산업 지원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금명간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사용시의 외화대출 조기 시행

이달중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용자대상품목을 확정, 업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7월부터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 외화대출의 공급규모는 연간 25억달러.

▲대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대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규제를 완화, 7월1일부터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업체당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확대. 이럴 경우 대기업들은 연간 약 10억달러 정도의 낮은 금리의 단기자금을 해외에서 추가로 유입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 그러나 하반기중에 실시기로 예정돼 있는 대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의 연장조치는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수입유발의 문제가 있어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기초 원자재를 대폭 추가

이달중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하반기중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산과 경합이 없는 기초원자재를 대폭 추가. 이와 관련 통산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기존 22개 품목에다 신규 29개 품목을 추가해 주도록 재경원에 최근 요청.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장개척 적극 지원

6월 15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는 한편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8조원으로 작년도의 4조3천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

▲하자보증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의 조기 배정

금년도 정부 예산 50억원중 50%를 우선 배정해 상반기중 우수품질마크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실시.

▲해외시장개척단의 조기 파견

10월중에 동유럽과 일본에 파견키로 했던 직물업계와 중전기기업계의 시장개척단을 각각 9월중으로 파견. 3·4분기로 예정돼 있던 對유럽 지사화업체 시장개척단을 6월로 앞당겨 파견하고 대일 전자·전기 부품시장개척단을 당초 4·4분기중에서 9월로 조기 파견.

技術開發과제 2천개 선정

— 中企廳, ‘中企기술혁신 3개년 계획’ 추진 —

내년부터 3년간 2천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가 선정돼 개발과제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1세기 고도기술 산업사회진입에 앞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평균적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우선 현재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국내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2분의 1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97년부터 99년까지 38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이중 정부는 2400억원을 조성,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범위인 총소요비용의 75%내에서 개별기업에 직접보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은 단독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복수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향후 3년간 추진될 이 기술혁신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현장에로기술의 타개와 첨단 고도기술의 중간진입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후 2천년부터는 한단계 높은 고도기술 부문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기술개발과제는 3가지 유형별로 다르게 추진되는데 공정개선 등 개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개별특성기술(1100개)은 애로가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매 분기마다 지원신청을 받는다. 향후 유망기술로 판단되는 일렉트로닉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등 7개 기술군에 속하는 연구개발형실용기술(700개)은 독자개발을 유도하되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한다. 이밖에 이업종간 융합화기술과 환경, 보건, 안정 등 제품생산에 관한 제한적 요소가 있는 이중복합기술(200개)은 개별 또는 복수기업의 공동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의 사용 범위는 연구장비구입비, 원자재시약구입비, 시험검사비, 정보취득비 등 기본 소요경비는 물론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된 연구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된다.

이 사업의 개발주체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연구기관, 모기업연구소 등은 해당 중소기업으로 부터 기술개발을 수탁받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경제행정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발표

- 공장설립 기한 1년 연장 등 -

정부는 「제25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업계와 경제단체들이 요구한 10개 분야 339개 과제중 118개를 수용,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7월중 「경제규제완화 위원회」에 상정, 최종 확정하게 될 주요 계획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 토지

△산업용지 개발=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을 현행 30만㎡이하에서 1백만㎡로 확대(96년하반기). 산업단지 개발시 국가·지자체에 귀속돼 오던 1개기업 전용도로·녹지등 공공시설을 국가귀속대상에서 제외(96년6월).

△수도권내 토지이용=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되는 관광지조성사업 범위와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재조정(96년하반기).

△토지이용=외국법인의 경우 제조업체에 대해 허용하는 실수용토지의 범위에 자가용창고를 포함(96년하반기).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내에서 용도변경없이 단순한 이용증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97년상반기).

△공유수면 매립=도시계획구역 지정 항만구역등 수익성이 높은 역에서의 민간매립허용 규모를 공업용지의경우 현행 23만㎡이상으로 확대(97년상반기)

■ 물류

물류시설=영업용창고등 물류시설도 산업단지에 입주허용(96년상반기). 창고의 종류를 현재의 6종에서 위험물 냉동·냉장 일반등 3종으로 축소(96년상반기).

■ 건축·건설업

설계등 용역사업에 사전조사비 및 설계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선(96년 4·4분기). 표준품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96년 8월). 하도급금액이 88%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선 발주기관별로 저가심가기준을 마련(96년 4·4분기). 기계제작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의 면허를 부여하고 일반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법적근거 마련(97년상반기).

■ 공장설립절차

△인·허가=공장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승인 허용(97년하반기). 공장설립승인취소기한을 「2년내 미착공」에서 3년으로 연장(96년하반기).

△공장건축·등록=공장설립승인후 공장설립완료기간(현행 4년)을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8년으로 연장(97년하반기). 공장등록사항 변경신청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96년하반기)

△산업단지관리=입주기업이 공장뿐 아니라 공장용지도 전체면적의 50%까지 임대가능토록 허용(96년하반기). 입주계약 해지요건을 「입주계약 후 1년내 착공」에서 3년으로 연장(96년하반기).

■ 수출·입 통관절차

▲1천달러 이하의 무환수출선박 탁송화물도 간이수출통관. (96. 7) ▲세관과 보세구역간의 사무자동화를 확대추진. (96. 7) ▲수출자동면허 금액기준을 2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확대. (96. 7)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이미 도입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품은 기계공업진흥회 등 해당품목단체의 수입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 (96. 7) ▲수출승인제도의 대상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 (96. 7) ▲수출품의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에 대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경우 외국도착 수입승인대상에 포함시켜 제3국에서 국내를 경유치 않고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96. 하)

중소 기술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수탁연구 지원사업 6월 30일까지 접수 -

과학기술처는 1996년도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중소기업 수탁연구 지원사업」 및 「기술지원단 POOL 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과학기술처 공고 제 1996-21호, '96. 6. 7) 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원 대 상 과 제
중소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 산하 출연(연)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부담 연구비의 50%이내를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 산하 출연(연)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사업 과제

기술지원단 POOL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자문 및 기술지도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의 협동연구 등 중소기업기술지원 • 출연(연)과 대학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활성화와 학·연간의 협력연구강화 지원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등을 통해 국제협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처 산하 출연(연)에서 기술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만 55세 이상의 기술지원 위원이 지도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체 애로기술 자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교육 -기술경영지도 -사업화 타당성 조사 -최신기술개발정보 제공 등
------------------	---	--

2. 접수기간 및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연간 수시 신청접수. 단 중소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공고시점 이전 계약과제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접수

◦ 접수(문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연구기획관리단 산업관리실
 서울 중구 홍인동 13-1 한성플라자빌딩 6층(우 : 100-430)
 전화 : (02)250-3162~5, FAX : (02)253-8236 / 8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사업명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소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중 12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소정양식) •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약서 사본 • 중소기업 부담연구비 입금증빙서류 (연구기관 발행 계산서 등)
기술지원단 POOL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과기처 산하 출연(연) 소속의 기술지원단 위원을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이외의 소재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신청서(소정양식) • 중소기업 사실확인원 • 활용신청서(소정양식)